



저소득층을 위한 중대질병보험제도 도입

이소양 연구원

■ 8월 30일 중국 정부는 저소득층인 농민 및 도시 미취업자들의 중대질병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「성향(城鄉)주민중대질병보험제도도입관련지침」(關於開展城鄉居民大病保險的指導意見)을 발표하였음.

- 중국의 기본의료보험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보험에 해당하며 1998년부터 도시 취업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도시취업자기본의료보험, 2003년부터 농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, 2007년부터 도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앞서 저소득층인 농민 및 도시 미취업자를 위해 기본의료보험이 도입됐는데 보상수준이 낮아서 암, 백혈병, 폐병 등 중대질병이 초래하는 고액 의료비용 부담은 아직 경감되지 못함.
- 2011년 기준으로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기금 및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기금의 누적 잉여자금은 각각 824억 위안, 413.6억 위안을 기록하여 성향(城鄉)주민중대질병보험을 도입하는 여력이 있음.
- 성향(城鄉)주민중대질병보험 보상범위는 중대질병으로 농민 및 도시 미취업자가 부담하는 고액 의료비용이며, 보험료는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기금 및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기금의 잉여자금으로 사용됨.
 - － 동서지역 경제발전 수준 차이로 인하여 보상한도 차이가 있지만 보상하한을 50%로 규정하며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기금 및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기금의 잉여자금이 없으면 재정으로 지원함.

■ 정부 당국은 자격요건을 갖춘 민영보험회사가 성향(城鄉)주민중대질병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중소형 보험회사 및 외자계 보험회사가 단기간에 이를 취급하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.

- 「지침」에 따르면 중국 내 건강보험 경영기간 5년 이상 및 양호한 신용 보유, 건전한 서비스망 및 의료보험 업무능력 완비, 중대질병보험 손해 사정 능력 구비 등 조건을 부합한 민영보험회사가 성향(城鄉)주민중대질병보험을 취급할 수 있음.

- 성향(城鄕)주민중대질병보험의 보험책임, 배상처리, 보상면책 등 조례는 정부 당국의 의지에 의하여 제정됐기 때문에 중소형 보험회사 및 외자계 보험회사가 성향(城鄕)주민중대질병보험을 취급하게 되면 이로 인한 손해율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됨.

(인민망, 신량망, 09/04 등)